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79호 2024. 3. 14.(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024-41호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 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410호 2024년도 마을어장 개발 보조사업 추가신청 공고 - 8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79호

사천시 고시 제2024-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사 천 시 장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주 소	사천시 동금6길 28
하천명		봉남천(지방하천)		
점용개요	위 치	사천시 향촌동 69-2번지, 70번지		
	면 적	0.78m ²		
	기 간	영구		
	목적 및 개요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주 신설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허가

사 천 시 공 보

제879호

사천시 고시 제2024-41호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고시

「어장관리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붙임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1부.

2024년 3월 14일

사 천 시 장

[붙임]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2024. 3.



사 천 시
[해양수산과]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1 목적 및 근거

○ 목 적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장정화·정비로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기반 조성
- 경상남도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어장정화 실시

○ 근 거

- 「어장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경남도)

2 추진방향

- 양식어장 정화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
- 어장 여건 및 어장정화·정비 등을 감안한 어장 재배치
- 어업권자의 어장관리의무 이행 강화
- 지방자치단체장의 폐어구 수거·처리장소 설치 운영

3 대상어장

- 「어장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장
-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나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
- 어장과 어장사이의 수면 등 어장의 주변 공유수면

※ 어업면허 현황

(단위: 건,ha)

총 계		마을어업		협동양식		죽방렴		패류양식		어류등양식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10	2,544.57	35	2,063.96	6	64.92	21	4.90	42	402.59	6	8.20

4 2024년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

○ 양식어장 정화사업 실시사항

- 『양식어장 정화사업』 우선 실시대상 어장
 - 적조 및 빈산소수괴 등 어업재해 발생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어장의 장기 이용으로 생산성이 저하 및 해상 유류사고 등으로 저질 및 주변 수역이 오염된 어장
 - 어장이 불규칙하게 개발, 시설물이 과다 설치되어 어장의 생산성 저하 및 관리가 곤란한 어장
 - 육상기인 오염물 유입이 심하여 어업권자의 어장 관리의무 중 어장청소로 퇴적물의 처리가 곤란한 어장
 - 기타 정화·정비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어업면허 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어장
- 어장정화사업 대상지 선정은 육상기인 오염물질 유입이 심화되는 지역의 어촌계 등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함.
다만, 다수 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정화선박을 이용하여 정화사업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접한 개인어장과 주변수역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할 수 있음.
- 어장정화사업은 효과 제고를 위해 가능한 대상어장을 집단·광역화하여 실시
- 어장 여건과 양식품종에 맞춰 퇴적물 수거, 경운, 객토, 준설 등의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시행하여야 함.

○ 대어업인 어장관리의무 지도 강화

- 대상: 면허어업 어업권자 및 행사자 등
- 내용
 - 어장청소 시기 도래 시 어업권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어장청소 의무이행 철저
 - ▷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과 [별표1](시행 2023. 1. 6.)
 - ▷ 개정 시행령 시행으로 종전의 어장청소 주기보다 어장청소 주기가 짧아지는 어장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어장청소에 한하여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기한까지 어장청소를 실시할 수 있음.
 - 어장청소 완료 후, 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어장관리대장에 어장청소 이행사항 기록 및 유지
 - 어장 청소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에게 일정 기간(60일 이내)을 정하여 어장청소를 명하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 수거·처리 등
 - 어업활동 중 발생한 폐어구 및 양식시설물 적정 처리

○ 양식어장 내 불법행위 지속적 지도·단속

- 어장정화·정비를 통해 인양된 오폐물로 인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무면허 양식시설 및 시설기준 초과 설치 어업권자, 유해약품 사용 어업권자 등 불법 행위근절 지도 및 단속
- 양식물의 원활한 관리로 유실예방 및 투기 금지 홍보

○ 폐어구 수거·처리장소 설치 운영

- 시장은 어업인이 폐어구를 수거·처리 할 수 있는 장소(이용 용이) 지정·운영
- 관내 항·포구에 폐어구 수거·처리장소를 설치하여 어장정화활동 효율성 증대
- 어장정화·정비 시 발생한 재활용 오폐물 중 닻 등에 대한 유·무상 처리 및 반출시 감독관 승인 필요
- 어업활동으로 발생된 폐어구(그물, 로프 등 어업용 폐자재)를 수거·처리하여 어업인의 폐어구 처리비용 부담 경감 및 폐어구의 적기 처리로 어장환경 보전

○ 유해생물 구제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을 통한 마을어장 및 해양 환경개선

- 마을어장 등 연안해역 패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생물(불가사리)를 구제하여 패류자원 번식·보호 및 어업 생산력 향상 도모
- 어항 인근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2024년도 사업계획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10개 사업			930,592	
1	양식어장 정화	2024. 3. ~ 12.	100ha	195,000	연안어장 내 정화작업 시 발생하는 오폐물 수거·처리
2	낙시터 환경개선	2024. 3. ~ 12.	10ha	40,000	낙시터 오염물질 정화작업 시 발생하는 오폐물 수거·처리
3	어업폐기물 처리지원	2024. 3. ~ 12.	어업용 폐기물 약 150톤	50,000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어업용 폐기물의 수거·처리
4	불가사리 구제	2024. 4. ~ 12.	불가사리 구제 약 100톤	100,000	마을어장 등 인근 연안에서 포획한 불가사리 수매·처리
5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2024. 2. ~ 12.	조업중 인양 쓰레기 약 130톤	100,000	어업인 조업활동 중 발생하거나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처리
6	해양쓰레기 정화	2024. 4. ~ 12.	해양쓰레기 약 123톤	100,000	도서·벽지 등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7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2024. 2. ~ 6.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1식	100,000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8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	2024. 4. ~ 12.	해양쓰레기 약 50톤	25,592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내 집적쓰레기 적기 처리
9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2024. 2. ~ 12.	해양쓰레기 약 100톤	200,000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바닷가 쓰레기 수거·처리 및 해안쓰레기 투기금지 홍보·계도
10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지원	2024. 2. ~ 12.	해양쓰레기 약 10톤	20,000	도서지역에 해양환경지킴이 배치 운영으로 해안 청소

끝.

사 천 시 공 보

제879호

사천시 공고 제2024-410호

2024년도 마을어장 개발 보조사업 추가신청 공고

우리 시 2024년도 마을어장 개발 보조사업 잔여물량에 대한 사업 추가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사 천 시 장

1. 신청대상: 관내 마을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
2. 대상사업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지원율(%)		지 원 내 용	신 청 자 격
			보조	자담		
마을어장 개발	2개소	54,000	50	50	유용 수산패류 살포를 위한 종자(종패) 구입비 지원	관내 마을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 (불법어업 잔존 어촌계 제외)

*사업량 변동 가능

3. 신청기간: **2024. 3. 18. ~ 4. 17.까지**
4. 접 수 처: 사천시(해양수산과 자원조성팀) * 신청인 직접방문 제출
5. 제출서류
 -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해양수산과 사무실 비치).
 - 나. 회의록 1부.
 - 다.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천 시 공 보

제879호

6.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가.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우선순위 평가 → 사업자 선정

7.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등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나. 마을어장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 중 배정받은 사업비보다 초과금 발생 시, 자기부담금으로 처리.

다.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반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별첨1]

※ **사업신청인이 사업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사업신청인이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경우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 시행
- 수출분야 지원사업은 무역협회 또는 외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빙자료 첨부
- 신청하는 사업비 총액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견적서 및 견적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자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중 자부담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부담 확보증빙자료 미제출 시 신청서 반려)
- 해양수산사업 지원제외(제한) 대상 * 사업별(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문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어업인 및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수산관계법령위반(어선법 포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 행정처분에 따른 지원제외(제한)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사전확인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어선법 포함)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최근 2년간 양식어장 무면허, 시설초과, 품종변경, 구역이탈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자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포기 연도로부터 2년간 지원제외(제한 기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원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사무소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정산보고서 제출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 선 집행 후 보조금 후 지원 시 검증대상 제외.
- 사업준공 이후에는 정부지원으로 조성된 시설물(10년간) 또는 기계·장비(5년간)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 5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별도의 경영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5천만원 미만은 경영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사천시장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내용이 건축물 구축 등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부기등기하여야 하고, 필요 시 근저당권 설정 등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처리·저장시설 등 각종 건축물

[서식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공통)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보조사업 수행계획

4.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